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2
------------	-----

2015.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10. 22. 남창진 의원 발의(2015. 10. 27. 회부)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현행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논리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의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광화문광장”이란 용어의 정의 중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를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 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형물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안 제13조제2항)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저작권법」 과 같은 상위법령은 조례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조항은 수정하기로 함 (안 제15조)
- 라.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함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료 징수 등을 현재 행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0월 22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먼저 ‘광화문광장’의 정의 중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광화문광장’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논란 요소를 줄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 등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3.2.15. 개정)에 의해 이용료 징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¹⁾, 현행 조례에서는(제13조제2항) 이용료 징수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규정과 행정의 맞지 않음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가 원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2011.5.26.부터 관리하고 있으며(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광화문광장

1) 저작권에 관한 지도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서 공공저작물은 문체부 고시(2013.2.15. 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하고 있음

내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음²⁾).

- 안 제15조(준용)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저작권법」과 같은 상위법령은 조례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시행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시행규칙의 포괄위임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준용함으로써 명확히 한다는 당초 입법취지도 감안할 때 안 제1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별지 서식 정비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3)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임.
- 정리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와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사용료의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고 있고, 조형물을 저작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료 수입금 전액은 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p> <p>2.~4. <생략></p> <p>제13조(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5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말한다.</p> <p>2.~4.<현행과 같음></p> <p>제13조(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며,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붙임 1>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관련 현황

동상현황

구 분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장군 동상
▪ 위치	광화문광장 중앙에 위치	광화문광장 남측에 위치
▪ 규모	10.4m(동상 6.2m, 기단 4.2m)	17m(동상 6.5m, 기단 10.5m)
▪ 준공	'09.10.9. (1,990백만원)	'68.4.27.(20백만원) ※'10년 전면보수
▪ 작가	홍익대 김영원 교수(조각가)	故 김세중 조각가

공공저작권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이용건수	52	7	12	8	25
사 용 료(A)	10,173	1,409	2,315	2,020	4,429
신탁수수료 (B=A의 15%)	1,525	211	347	303	664
시 분배금액 (C=A-B)	8,648	1,198	1,968	1,717	3,765

저작물 목록

연번	저작물	종류	수량	비고
1	세종대왕 동상	미술저작물	1	
2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훈민정음석)	미술저작물	1	
3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훈천의)	미술저작물	1	
4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촉우기)	미술저작물	1	
5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양부일구)	미술저작물	1	
6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열주-육진개척도)	미술저작물	1	
7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열주-서운관도)	미술저작물	1	
8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열주-주자소도)	미술저작물	1	
9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 (열주-대마도정벌도)	미술저작물	1	
10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물 (열주-지음도)	미술저작물	1	
11	세종대왕 동상 관련 조형 (열주-집현전학사도)	미술저작물	1	
12	이순신장군 동상	미술저작물	1	
13	이순신장군 동상 관련 조형물 (거북선)	미술저작물	1	
14	이순신장군 동상 관련 조형물 (북)	미술저작물	2	

<붙임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41호, 2010.12.17 제정)

개정 2013.2.15(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

제4조(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공공저작권의 신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①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